

F-1.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비교

구분	법정관리(회사정리법)	화의제도(화의법)	비고
의의	회사가 파산위기에 처했으나 갱생가망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 경영권 없음 채권단의 사전동의 불필요	부실한 기업이 법원의 중재 감독하에 채권단과 협정을 맺고 일정기간 채무변제를 유예함으로써 갱생도모 경영권 있음 채권단의 사전동의 필요	
절차	-정리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 -정리절차개시결정(보전관리인선임)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 결정 -정리계획 수행 -정리계획 종결	-회의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결정(법원);신청 후 10일 -심사:법원이 조사위원, 정리위원 선임 -화의개시결정(법원);보전처분후 3월내 -채권신고(2주-1월),채권자집회(1월) -화의 인부결정;채권자 집회후 1-2일	
법원간여	정리절차 종결시 종료 (수행책임:관리인)	화의 인가시 절차종료 (수행책임:회사)	
심사요건	-재정적 궁핍으로 인한 파탄 -갱생의 가망성 -공익적 성격이 강한 회사	-재정적 궁핍으로 인한 파탄 -갱생의 가망성 -주로 중소기업에 적용	
효과	-부채상환부담 해소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채무 동결 -법정관리기간은 최장 10년	-일정기간 채권행사 유보(단, 보전처분에 불구하고 담보권행사 가능)	
경영	-관리인이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며 경영진 재구성 -부실경영책임으로 주식소각, 감자	-현 경영진 체제 유지하여 자력갱생도모	
가능성	-존속가치>청산가치 위주로 채권단과 법원이 판단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채권단 판단	